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07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적기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(현안사업추진과) 신설·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제건설국 도시과 ⇨ 경제건설국 도시과, 현안사업추진과(안 제6조)

1) 한시기구 신설(1과 1담당) : 현안사업추진과(보상팀)

2) 운영기간 : 2024. 1. 1. ~ 2025. 12. 31.(2년)

| 구분 | 총계 | | 본청 | | 직속기관 | | 사업소 | | 의회 | | 읍면출장소 | |
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|
| | 부서 | 담당 | 부서 | 담당 | 부서 | 담당 | 부서 | 담당 | 부서 | 담당 | 부서 | 담당 |
| 기존 | 35 | 169 | 18 | 88 | 7 | 32 | 1 | 4 | 1 | 2 | 8 | 43 |
| 변경 | 36 | 170 | 19 | 89 | 7 | 32 | 1 | 4 | 1 | 2 | 8 | 43 |
| 증감 | +1 | +1 | +1 | +1 | | | | | | | | |

3) 본청 직제 순서

| | |
|-------|-------|
| 기획실 | |
| 정책담당관 | 군수 직속 |

| | |
|-----------|---|
| 행정지원국(8과) | 행정과 → 올림픽체육과 → 복지정책과 → 가족복지과 → 민원토지과 → 세정과 → 회계과 → 인재육성과 |
| 경제건설국(9과) | 관광문화과 → 허가과 → 경제과 → 환경과 → 산림과 → 안전교통과 → 건설과 → 도시과 → 현안사업추진과 |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(관계법령 발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3. 10. 26. ~ 2023. 11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도시과”를 “도시과, 현안사업추진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한은
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6조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 ① 경제건설국에 관광문화과, 허가과, 경제과, 환경과, 산림과, 안전교통과, 건설과, <u>도시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6조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 ----- <u>도시과, 현안</u> <u>사업추진과</u>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제2조(한시기구의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.

2.~ 5. (생략)

② ~⑤ (생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행정과장 이 영 배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210 |